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6호 2017. 3. 10. (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07호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208호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7-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남해안일주일주도로 (양포-술상) 확포장공사]..... 8
- 하동군 고시 제2017-29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15
- 하동군 고시 제2017-30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19
- 하동군 고시 제2017-3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0
- 하동군 고시 제2017-34호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2
- 하동군 고시 제2017-3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주교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34
- 하동군 고시 제2017-3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여의(황천2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 35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7-235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6
- 하동군 공고 제2017-246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8
- 하동군 공고 제2017-270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라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86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7-254호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93
- 하동군 공고 제2017-276호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 생태해설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96
- 하동군 공고 제2017-279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연화마을 세천)..... 104
- 하동군 공고 제2017-281호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110
- 하동군 공고 제2017-282호 병천(두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113
- 하동군 공고 제2017-298호 군도 2호선(화개장터삼거리~화개교~화개119지역대 구간) 교통통제 공고· 116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76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207호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고전면 대덕리 관할구역 중 “조진(助津)”을 “잔너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별	리명	정원	관 할 구 역	읍면별	리명	정원	관 할 구 역
고전면 古田面	범아리 (泛鵝)	5	백석(白石) 아정(鵝亭) 울촌(栗村) 범사(泛擄) 매자(梅子)	고전면 古田面	범아리 (泛鵝)	5	백석(白石) 아정(鵝亭) 울촌(栗村) 범사(泛擄) 매자(梅子)
	성천리 (城川)	3	지소(紙所) 남성(南城) 상성(上城)		성천리 (城川)	3	지소(紙所) 남성(南城) 상성(上城)
	신월리 (新月)	4	사막(沙幕) 신월(新月) 시목(柿木) 노화(盧花)		신월리 (新月)	4	사막(沙幕) 신월(新月) 시목(柿木) 노화(盧花)
	전도리 (錢島)	4	신방(新芳) 선소(船所) 월진(月津) 전도(錢島)		전도리 (錢島)	4	신방(新芳) 선소(船所) 월진(月津) 전도(錢島)
	대덕리 (大德)	3	대덕(大德) 합진(蛤津) <u>조진(助津)</u>		대덕리 (大德)	3	대덕(大德) 합진(蛤津) <u>잔너리</u>
	고하리 (古河)	4	홍평(虹坪) 주성(舟城) 고하(古河) 죽전(竹田)		고하리 (古河)	4	홍평(虹坪) 주성(舟城) 고하(古河) 죽전(竹田)
	성평리 (星坪)	2	신덕(新德) 성평(星坪)		성평리 (星坪)	2	신덕(新德) 성평(星坪)
	명교리 (銘橋)	2	명교(銘橋) 일기(日基)		명교리 (銘橋)	2	명교(銘橋) 일기(日基)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208호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6) 제 476 호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17 - 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하 동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결정	군도	20호	노량~고이	술상리 대치리	31,072	술상리 41-7	대치리 72-2	중평리 산62-3	L=1.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남해안일주도로(양포-술상)확포장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5년 4월 2일~ 2018년 4월 2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기간 : 2017년 2월 28일 ~ 3월 15일

-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별관 2층)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토 지 조 서

사업명 : 남해안일주도로(양포-술상) 확포장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지번	편입지번		전제	편입	성명	주소	
계							31,072			
1	진교	술상	41-3	41-7	전	172	16	하동군		
2	진교	술상	산89-1	산89-10	임야	2,988	1,197	이경선	부산 연제구 연산동 395 한양아파트 2-802	
3	진교	술상	산83-1	산83-11	임야	2,978	403	하동군		
4	진교	술상	산89-5	산89-12	임야	103	55	한효경등 2인	사천군 곤양면 대진리 746-7	
5	진교	술상	산83-6	산83-12	임야	3,827	704	하동군		
6	진교	술상	산89-6	산89-13	임야	417	92	한효경등 2인	사천군 곤양면 대진리 746-7	
7	진교	술상	47-1	47-4	전	2,248	231	하동군		
				47-5	전		50	하동군		
8	진교	술상	48-3	48-5	전	437	239	하동군		
9	진교	술상	48	48-4	전	367	96	하동군		
10	진교	술상	47	47-3	전	446	315	하동군		
11	진교	술상	47-2	47-6	전	1,289	144	김종윤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09	
12	진교	술상	49	49-1	전	1,061	292	하동군		
13	진교	술상	산90-2	산90-3	임야	3,174	396	하동군		
14	진교	술상	52	52-1	전	982	91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10) 제 476 호

				52-2	전		2	하동군	
15	진교	술상	221	221-1	전	536	7	이충생	울산광역시 남구 아음로 24, 301동 705호(아음동, 아음동부아파트)
16	진교	술상	223	223-1	전	420	49	하동군	
17	진교	술상	222	222	창고	473	473	이영우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87-64
18	진교	술상	226	226-1	전	565	382	이충생	울산광역시 남구 아음로 24, 301동 705호(아음동, 아음동부아파트)
19	진교	술상	209	209-1	전	833	233	하동군	
20	진교	술상	227	227	전	139	139	하동군	
21	진교	술상	203	203-1	전	364	233	하동군	
22	진교	술상	228	228-1	전	446	45	김재숙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87-26
23	진교	술상	229	229-3	전	608	34	하동군	
24	진교	술상	202	202-1	전	942	251	하동군	
25	진교	술상	201	201-1	전	1,193	344	하동군	
26	진교	술상	산94	산94-3	임야	3,376	53	김두애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12
27	진교	술상	230	230-1	전	367	38	하동군	
28	진교	술상	산104	산104	임야	4,054	160	유두리 등 8인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87-26
29	진교	술상	231	231-1	전	1,081	234	하동군	
30	진교	술상	194	194-1	전	327	218	하동군	
				194	전	109	109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11) 제 476 호

31	진교	술상	193	193-1	전	436	276	하동군		
32	진교	술상	232	232-1	전	228	73	하동군		
33	진교	술상	192	192-2	전	830	9	강소준등 4인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04	
34	진교	술상	233	233-3	전	1,372	776	이상훈	부산 북구 덕포1동 427-4	
35	진교	술상	192-1	192-3	전	456	36	강소준등 4인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04	
36	진교	술상	산101-1	산101-11	임야	2,830	791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37	진교	술상	233-1	233-1	전	66	59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47	
38	진교	술상	산95	산95-3	임야	1,564	3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산95-4	임야		204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39	진교	술상	30-7	30-19	전	1,049	20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30-20	전		31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30-21	전		1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40	진교	술상	산95-2	산95-5	임야	915	231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41	진교	술상	30-3	30-17	도로	340	14	김원세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98	
				30-18	도로		6	김원세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98	
42	진교	술상	산101-4	산101-4	임야	1,285	5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47	
43	진교	술상	30-4	30-4	전	13	13	김원세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98	
44	진교	술상	31-3	31-3	전	13	13	윤광이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05-3	

하 동 군 공 보

(12) 제 476 호

45	진교	술상	30-5	30-5	도로	13	13	박명이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496
46	진교	술상	산96-8	산96-17	임야	1,979	159	윤희상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33
47	진교	술상	30-1	30-15	대	330	30	박미경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1-1 대산아파트502
				30-16	대		1	박미경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1-1 대산아파트502
48	진교	술상	31-4	31-4	전	83	83	윤광이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05-3
49	진교	술상	30-11	30-22	전	86	42	박미경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6,502호(대산아파트)
50	진교	술상	30	30-14	전	404	288	이한규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35
51	진교	술상	30-12	30-12	전	321	153	이한규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35
52	진교	술상	30-13	30-23	전	339	182	하동군	
53	진교	술상	30-6	30-6	도로	33	33	박명이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496
54	진교	술상	산96-9	산96-18	임야	1,679	289	하동군	
55	진교	술상	29-1	29-5	전	347	44	하동군	
				29-6	전		2	하동군	
56	진교	술상	산100-8	산100-9	임야	1,596	446	박미경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1-1 대산아파트 502
				산100-11	임야		3	박미경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1-1 대산아파트 502
57	진교	술상	26	26-14	전	255	70	유정승	부산시 북구 범일동 1383-2
58	진교	술상	29-2	29-7	전	291	69	박명이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496
59	진교	술상	28	28-1	전	221	122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13) 제 476 호

60	진교	술상	산96-11	산96-21	임야	622	415	김옥자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03-5
61	진교	술상	산96-10	산96-19	임야	917	268	박종근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47
62	진교	술상	산96-1	산96-15	임야	7,566	219	이광학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95
63	진교	술상	산94-1	산94-4	임야	4,523	19	하동군	
64	진교	술상	산94-2	산94-5	임야	3,308	1,084	강현균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21-9
65	진교	술상	34	34-1	전	132	78	하동군	
66	진교	술상	31-8	31-13	전	41	2	윤희상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33
67	진교	술상	31	31-9	대	265	1	윤희상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33
68	진교	술상	31-6	31-12	전	9	1	윤희상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33
69	진교	술상	31-1	31-10	전	316	6	민장식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64, 3동 1201호(남양동,동성아파트)
70	진교	술상	31-11	31-11	전	316	34	민장식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64, 3동 1201호(남양동,동성아파트)
71	진교	술상	41-5	41-5	전	375	34	하동군	
72	진교	술상	산83-10	산83-10	임	105	105	하동군	
73	진교	술상	산89-8	산89-8	임	898	63	하동군	
74	진교	술상	709-6	709-6	도	1,761	576	국	국토교통부
75	진교	술상	산95-1	산95-1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76	진교	술상	706	706	도	307	271	국	국토교통부
77	진교	술상	31-2	31-2	도	357	231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14) 제 476 호

78	진교	술상	29-3	29-3	도	26	26	하동군		
79	진교	술상	26-9	26-9	도	817	3	하동군		
80	진교	술상	26-2	26-2	제	645	103	국	기획재정부	
81	진교	술상	739	739	도	5,772	86	국	국토교통부	
82	진교	술상	26-12	26-12	유	880	202	국	기획재정부	
83	진교	술상	29-4	29-4	도	182	115	하동군		
84	금남	중평	601-16	601-16	제방	410	410	하동군		
85	금남	중평	산64-1	산64-4	임야	#####	6,221	하동군		
86	금남	중평	산62-1	산62-3	임야	6,645	3,922	하동군		
87	금남	중평	116	116-3	답	1,620	211	정홍군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7	
88	금남	중평	115-5	115-5	답	394	394	국	재정경제부	
89	금남	중평	116-2	116-2	도로	241	241	국	국토교통부	
90	금남	중평	866	866	도로	4,061	1,950	국	국토교통부	
91	금남	대치	72-2	72-2	전	222	222	하동군		
92	금남	대치	73-11	73-24	임야	6,725	709	하동군		
93	금남	대치	73-6	73-6	도로	583	220	하동군		
94	금남	대치	73-7	73-7	임야	517	517	하동군		

하동군 고시 제 2017 - 29 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1	도근점	171	196280.98	257913.91	31028-범왕리	철재	2001-11-12	중부
2	도근점	176	196203.48	258039.75	31028-범왕리	철재	2001-11-12	중부
3	도근점	183	188389.81	257084.75	31023-탑리	기타	1995-06-20	중부
4	도근점	225	191118.8	258046.96	31024-삼신리	기타	2001-10-09	중부
5	도근점	254	182905.9	262945.13	32034-평사리	철재	2001-04-19	중부
6	도근점	264	182836.21	263026.02	32034-평사리	철재	2001-04-19	중부
7	도근점	279	183267.56	262698.28	32034-평사리	기타	2001-04-19	중부
8	도근점	295	181645.07	263261.75	32021-미점리	맨홀식	2003-03-25	중부
9	도근점	297	181403.54	263354.32	32021-미점리	기타	2003-03-25	중부
10	도근점	300	189634.66	264810.44	32028-등촌리	기타	2003-12-12	중부
11	도근점	304	188686.84	264269.24	32027-동매리	기타	1995-09-13	중부
12	도근점	305	188624.9	264427.16	32027-동매리	철재	1995-09-13	중부
13	도근점	322	187322.45	264554.24	32029-매계리	철재	2000-01-11	중부
14	도근점	339	185509.58	265020.8	32025-신흥리	철재	2003-06-09	중부
15	도근점	342	185458.9	265331.71	32025-신흥리	기타	2003-06-09	중부
16	도근점	343	185438.83	265751.36	32025-신흥리	철재	2003-06-09	중부
17	도근점	344	185408.19	265798.52	32025-신흥리	철재	2003-06-09	중부
18	도근점	350	187455.38	265352.66	32027-동매리	철재	1994-06-10	중부
19	도근점	351	187328.86	265364.21	32027-동매리	철재	1994-06-10	중부
20	도근점	355	186163.3	265144.74	32026-중대리	철재	1994-06-10	중부

하 동 군 공 보

(16) 제 476 호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접종류	접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21	도근점	358	186452.73	265201.69	32026-중대리	철재	1994-06-10	중부
22	도근점	361	175821.83	270171.58	33025-동산리	철재	2003-08-01	중부
23	도근점	371	176511.05	270622.51	33021-관리	철재	2003-08-01	중부
24	도근점	390	181079.1	269453.37	33024-서리	철재	2003-05-20	중부
25	도근점	403	178720.91	270728.33	33023-동리	기타	2003-05-20	중부
26	도근점	408	179399.11	270528.79	33023-동리	철재	2003-05-20	중부
27	도근점	410	179917.74	270284.01	33023-동리	기타	2003-05-20	중부
28	도근점	418	176155.82	272620.19	33025-동산리	철재	1998-04-18	중부
29	도근점	438	175409.7	270668.11	33025-동산리	철재	2000-05-24	중부
30	도근점	446	175481.97	272307.95	33025-동산리	철재	1998-04-18	중부
31	도근점	453	181150.86	268812.42	33024-서리	기타	2005-08-29	중부
32	도근점	455	182945.72	268836.41	33024-서리	철재	2005-08-29	중부
33	도근점	459	183300.63	268810.64	33024-서리	철재	2005-08-29	중부
34	도근점	461	180428.6	270058.99	33023-동리	철재	2005-08-29	중부
35	도근점	468	175221.56	271833.92	33025-동산리	철재	2005-11-14	중부
36	도근점	471	175742.04	272423.53	33025-동산리	철재	2005-11-14	중부
37	도근점	1099	174838.07	279286.76	38026-박달리	철재	2001-04-20	중부
38	도근점	1103	176792.48	277533.2	38024-우복리	맨홀식	2004-03-04	중부
39	도근점	1109	176051.54	278490.91	38025-통정리	기타	1997-09-10	중부
40	도근점	1114	174721.49	279013.45	38026-박달리	철재	2001-04-20	중부
41	도근점	1122	174140.82	278546.55	38026-박달리	철재	2001-09-19	중부
42	도근점	1135	177040.17	277237.04	38024-우복리	기타	2004-03-04	중부
43	도근점	1138	176964.83	276916.83	38024-우복리	맨홀식	2004-03-04	중부
44	도근점	1139	176907.4	276807.7	38024-우복리	맨홀식	2004-03-04	중부
45	도근점	1143	175993.19	276183.92	38023-감당리	기타	2004-03-04	중부
46	도근점	1168	172012.42	279246.47	38027-지례리	철재	1998-07-02	중부
47	도근점	1174	172615.4	279252.77	38027-지례리	철재	1998-07-02	중부
48	도근점	1183	173000.29	276718.18	38021-운암리	기타	1998-11-03	중부
49	도근점	1193	177030.85	275159.88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0	도근점	1194	176958.67	275152.66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1	도근점	1195	177114.85	275023.28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2	도근점	1197	176879.5	275235.52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3	도근점	1198	176794.88	275403.86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4	도근점	1207	176681.08	275438.47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5	도근점	1208	176364.93	275740.06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6	도근점	1209	176336.8	275934.12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57	도근점	1210	176338.27	276141.82	38023-감당리	기타	2001-05-23	중부
58	도근점	1211	177894.67	275986.03	38024-우복리	철재	1998-07-08	중부
59	도근점	1228	171161.73	278396.62	38027-지례리	기타	1992-07-10	중부
60	도근점	1233	176095.93	278384.68	38025-통정리	기타	1997-09-10	중부
61	도근점	1239	177789.27	275210.29	38023-감당리	철재	2001-05-23	중부
62	도근점	1246	178043.44	275906.57	38024-우복리	철재	2001-05-23	중부
63	도근점	1247	177966.89	276042.52	38024-우복리	철재	2001-05-23	중부
64	도근점	1337	187653.01	271016.12	40024-상이리	철재	2002-11-28	중부
65	도근점	1372	183934.06	273172.88	40021-평촌리	철재	1995-07-26	중부
66	도근점	1373	183791.75	273195.39	40021-평촌리	철재	1995-07-26	중부
67	도근점	1387	193621.82	266760.36	40025-묵계리	기타	1997-11-20	중부
68	도근점	1390	181800.49	271693.84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69	도근점	1391	181718.04	271659.94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0	도근점	1392	181633.47	271569.07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71	도근점	1393	181603.41	271452.72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2	도근점	1394	181631.86	271425.72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3	도근점	1395	181696	271434.7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4	도근점	1396	181855.06	271248.64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5	도근점	1397	181891.13	271165.32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6	도근점	1398	181973.91	271081.24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7	도근점	1399	182237.56	270890.34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8	도근점	1401	182339.24	270874.06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79	도근점	1402	182423.75	270899.81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80	도근점	1403	182468.16	270865.79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81	도근점	1404	182564.44	270830.92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82	도근점	1406	182846.11	270692.37	40022-명호리	기타	2000-07-06	중부
83	도근점	1407	182921.81	270891.94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84	도근점	1408	183016.22	270916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85	도근점	1412	193495.2	266745.52	40025-묵계리	기타	1997-11-20	중부
86	도근점	1416	185741.04	270462.42	40023-중이리	기타	2000-07-07	중부
87	도근점	1417	185847.38	270090.11	40023-중이리	철재	2000-07-07	중부
88	도근점	1418	185740.12	269839.46	40023-중이리	철재	2000-07-07	중부
89	도근점	1419	185636.3	269811.19	40023-중이리	철재	2000-07-07	중부
90	도근점	1430	184423.17	272938.86	40021-평촌리	기타	2004-01-08	중부
91	도근점	1445	186108.09	282632.64	41029-대곡리	플라스틱	2002-05-11	중부
92	도근점	1448	187094.54	280222.23	41021-청룡리	철재	1995-07-06	중부
93	도근점	1452	187045.84	283647.24	41029-대곡리	철재	1995-05-11	중부
94	도근점	1455	187137.62	278838.55	41021-청룡리	기타	1997-01-16	중부
95	도근점	1481	188303.72	280796.79	41027-병천리	철재	2004-08-04	중부
96	도근점	1497	193644.11	280408.61	41023-두양리	플라스틱	2002-11-21	중부
97	도근점	1498	193472.13	280475.81	41023-두양리	기타	2002-11-21	중부
98	도근점	1521	185587.9	284402.29	41030-북방리	기타	2001-05-24	중부
99	도근점	1524	186061.03	284432.75	41030-북방리	철재	2001-05-24	중부
100	도근점	1525	186195.25	284597.9	41030-북방리	철재	2001-05-24	중부
101	도근점	1526	186290.95	284708.92	41030-북방리	철재	2001-05-24	중부
102	도근점	1527	186377.99	284491.32	41030-북방리	철재	2001-05-24	중부
103	도근점	1528	186515.98	284328.28	41029-대곡리	철재	2001-05-24	중부
104	도근점	1532	184742.53	283450.35	41030-북방리	철재	2000-07-19	중부
105	도근점	1534	184827.4	283041.43	41030-북방리	철재	2000-07-19	중부
106	도근점	1539	184779.08	281768.89	41029-대곡리	기타	2002-03-04	중부
107	도근점	1542	187010.26	280728.13	41021-청룡리	기타	2003-08-01	중부
108	도근점	1554	188976.12	280597.87	41025-문암리	기타	1993-07-20	중부
109	도근점	1556	189119.32	280444.22	41025-문암리	기타	1993-07-20	중부
110	도근점	1559	187045.62	280066.74	41021-청룡리	기타	1995-07-06	중부
111	도근점	1674	192003.73	258516.58	31026-운수리	기타	2006-03-10	중부
112	도근점	1891	178818.65	268675.21	33022-우계리	철재	2006-05-15	중부
113	도근점	1892	178816.84	268596.7	33022-우계리	철재	2006-05-15	중부
114	도근점	1913	188595.08	276135.57	41034-위태리	기타	1999-01-19	중부
115	도근점	1917	181599.89	271233.08	40022-명호리	철재	2000-07-06	중부
116	도근점	1938	173871.28	276416.18	38022-장암리	기타	1997-06-23	중부
117	도근점	1940	192976.45	266614.91	40025-묵계리	기타	1997-11-20	중부
118	도근점	1942	192732.93	266674.3	40025-묵계리	철재	1997-11-20	중부
119	도근점	2015	183870.69	261078.33	32034-평사리	철재	2007-01-10	중부
120	도근점	2019	184386.86	260435.68	31021-부춘리	철재	2007-01-10	중부

하 동 군 공 보

(18) 제 476 호

■ 지적도근점(폐기)

순번	점종류	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지소재지	표지재질	설치일자	원점
121	도근점	2020	184512.18	260217.67	31021-부춘리	철재	2007-01-10	중부
122	도근점	2027	185090.55	259186.92	31021-부춘리	표석	2007-01-10	중부
123	도근점	2028	185102.91	258963.49	31021-부춘리	철재	2007-01-10	중부
124	도근점	2044	187331.37	257115.65	31022-덕은리	철재	2007-01-10	중부
125	도근점	2079	180969.89	263418.7	32021-미점리	철재	2007-02-12	중부
126	도근점	2080	181047.88	263418.89	32021-미점리	철재	2007-02-12	중부
127	도근점	2081	181165.92	263387.15	32021-미점리	철재	2007-02-12	중부
128	도근점	2082	181311.6	263391.75	32021-미점리	맨홀식	2007-02-12	중부
129	도근점	2083	181397.66	263368.83	32021-미점리	철재	2007-02-12	중부
130	도근점	2106	195798.52	258068.27	31027-용강리	기타	1998-03-03	중부
131	도근점	2107	195848.24	258063.97	31028-범왕리	기타	1998-03-03	중부
132	도근점	2120	197242.87	260043.08	31029-대성리	철재	2006-10-16	중부
133	도근점	2131	189945.25	274097.54	41033-궁항리	철재	1998-09-08	중부
134	도근점	2183	184044.01	264488.48	32024-신성리	기타	2007-12-06	중부
135	도근점	2189	183181.24	264048.32	32022-축지리	철재	2007-12-06	중부
136	도근점	2202	181580.95	263258.02	32021-미점리	기타	2007-12-06	중부
137	도근점	2284	186789.97	275410.44	41035-회신리	철재	2008-02-20	중부
138	도근점	2347	186647.93	259882.54	31021-부춘리	기타	2002-05-02	중부
139	도근점	2362	185428.69	264637.79	32030-정동리	기타	1994-06-10	중부
140	도근점	2414	175682.54	271261.64	33025-동산리	철재	2009-02-04	중부
141	도근점	2416	175433.59	270981.27	33025-동산리	기타	2009-02-04	중부
142	도근점	2420	174756.27	270136.57	33025-동산리	맨홀식	2009-02-04	중부
143	도근점	2422	174513.05	269991.21	33025-동산리	기타	2009-02-04	중부
144	도근점	2423	174400.99	269868.39	33025-동산리	철재	2009-02-04	중부
145	도근점	2425	174308.76	269593.34	33025-동산리	맨홀식	2009-02-04	중부
146	도근점	2518	187535.39	281372.91	41028-법대리	철재	2010-05-13	중부
147	도근점	2533	188912.21	280437.18	41025-문암리	철재	2010-07-07	중부
148	도근점	2535	188835.32	280350.83	41025-문암리	철재	2010-07-07	중부
149	도근점	2543	189246.54	280344.38	41025-문암리	철재	2010-07-07	중부
150	도근점	2545	184483.22	282814.9	41030-북방리	기타	2010-07-19	중부
151	도근점	2546	184471.09	282723.42	41030-북방리	기타	2010-07-19	중부
152	도근점	2587	196448.16	258753.72	31029-대성리	철재	2010-11-25	중부
153	도근점	2605	191508.71	267914.99	40025-목계리	철재	2010-11-24	중부
154	도근점	2738	198461.27	255960.64	31028-범왕리	철재	2010-12-10	중부
155	도근점	2808	190006.02	275570.66	41034-위태리	철재	2010-12-21	중부
156	도근점	2913	170873.14	279243.7	38027-지례리	철재	1998-07-02	중부
157	도근점	2934	184811.5	260383.68	31021-부춘리	철재	2012-10-31	중부
158	도근점	3003	181110.43	269230.66	33024-서리	철재	2013-11-07	중부
159	도근점	3007	180974.22	268562.41	33024-서리	철재	2013-11-07	중부

하동군 고시 제2017 - 30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하 동 군 수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m ²)	결정(변경·폐지) 사유
남해	건너몰천	535-4 구	2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의한 변경
		738-2 답	10	
		825-5 도	11	
		843 도	60	
		544 답	62	
		543-2 답	48	
		704-2 전	19	
		703 답	60	
		701 답	159	
		819 구	2	
		639 답	82	
		638 답	189	
		632 답	65	
		632-1 도	20	
		633-1 도	3	
		620-2 도	7	
	815 구	4,002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사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하동군 고시 제2017-3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2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천길 43-30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2.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21) 제 476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59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159-49	20170224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57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대전방길 28	20170224	20070618	대전방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20-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5	20170224	2007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8, 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1-28	20170224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 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17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천길 43-30	20170224	20070618	옛날에 금이 많이 나던 하천 이라는 뜻을 따서 금천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375-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485	20170224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47-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68	20170224	20080402	횡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912-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양샘골길 28-1	20170224	20080402	원양이라는 자연마을명에 고유지명을 합성하여 원양샘골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26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280	20170224	20090302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평해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4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642-32	20170224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하동군 고시 제2017 - 34호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09-48호(2009.12.7.), 제2010-44호(2010.12.31.), 제2011-34호(2011.8.1.), 제2012-68호(2012.12.27.), 제2013-49호(2013.9.6.), 제2014-50호(2014.6.18.), 제2016-21호(2016.2.25.)로 지정 및 변경 승인된 금성조선농공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하 동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금성 조선농공단지

나.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다. 면 적 : 146,150m²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하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 BN금성개발(주) 천학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당 초 : 2009. 12. ~ 2017. 2.

○ 변 경 : 2009. 12. ~ 2017. 12.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다. 변경사유 : 일부부지(연막마을 산 측 진입로로 이용되는 부분)의 제외를 요구하는 민원과 확정측량 결과 승인 협의과정 과다 소요(부지면적 확정 지연)로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불가로 사업마무리 서류 작성 및 행정인·허가 협의 기간 필요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산업분류코드	유 치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07,970	100.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150	-	146,150	100.0	
산업시설용지	107,970	-	107,970	73.9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공공시설용지	32,800	-	32,800	22.4	
도 로	9,970	-	9,970	6.8	
주차장	2,360	-	2,360	1.6	
공 원	7,760	-	7,760	5.3	
완충녹지	12,710	-	12,710	8.7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하 동 군 공 보

(24) 제 476 호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672	9,970	1	284	3,010	2	388	6,960	-	-	-
중로	2	388	6,960	-	-	-	2	388	6,960	-	-	-
소로	1	284	3,010	1	284	3,010	-	-	-	-	-	-

나)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3) 공원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4) 녹지시설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710	-	12,710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486	-	7,486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224	-	5,224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5) 상수도시설계획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484.4	계획용수량 : 484.4㎡/일
공 업 용 수	-	
생 활 용 수	484.4	

6) 오·폐수처리시설계획

○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일)	비 고
계	56.8	계획 오수량 : 56.8㎡/일
산 업 폐 수	1.8	
생 활 오 수	55.0	

7)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MWh/년)	비 고
계	8,140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하 동 군 공 보

(26) 제 476 호

나) 통신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586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계획(백만원)			비 고 (변경사유 등)
		국비	지방비	민자	
기 정	27,595	-	-	27,595	· 공사비 27,595백만원
변 경	27,595	-	-	27,595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기 정 (백만원)	변 경(백만원)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총 투자비	27,595	27,595	8,965	11,378	4,805	2,447
설 계 비	1,100	1,100	1,100	-	-	-
공 사 비	14,978	14,978	-	9,990	3,106	1,882
보 상 비	6,840	6,840	6,840	-	-	-
감 리 비	753	753	218	197	196	142
부 대 비	400	400	65	150	150	35
제세공과금	10	10	-	1	1	8
관 리 비	890	890	409	174	128	179
물가변동비	828	828	-	392	393	43
건 설 이 자	1,796	1,796	333	474	831	158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150	-	146,150	100.0	
산업시설용지	107,970	-	107,970	73.9	실수요자 사용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실수요자 사용
공공시설용지	32,800	-	32,800	22.4	
도 로	9,970	-	9,970	6.8	하동군에 귀속
주차장	2,360	-	2,360	1.6	하동군에 귀속
공 원	7,760	-	7,760	5.3	하동군에 귀속
완충녹지	12,710	-	12,710	8.7	하동군에 귀속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실수요자 자체관리

나. 시설물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 2-1 호선	B=15.0m	180.0m	하동군에 귀속
	중로 2-2 호선	B=15.0m	208.0m	〃
	소로 1-1 호선	B=10.0m	284.0m	〃
	도로 L형 측구		1,237.0m	〃
구조물	보강토 옹벽		83.0m	〃
	L형 옹벽	H=1.5~5.5m	46.0m	〃
우수	우수관로	D450	426.0m	〃
	우수받이	TYPE-A,B	48EA	〃
	우수연결관	D300	267.0m	〃
	우수맨홀	GRP 1호	6개소	〃
	접속T형관	D450X300	30개소	〃
오수	오수관로	D200	79분	〃
	오수맨홀	GRP 1호	11개소	〃
	오수처리장		1개소	실수요자 자체관리
상수	상수관로	D80	379.0m	하동군에 귀속
	제수변		10개소	〃
	소화전	지상식소화전	2개소	〃
포장	ASP포장	#78	59.6a	〃
부대	보도용난간	H1.0 X W2.0	66경간	〃
전기	가로등		13분	〃

하 동 군 공 보

(28) 제 476 호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계	답	도로	잡	전	제방	기타
필지 수	75	33	3	26	8	2	3
면 적(m ²)	146,150	49,576	3,681	74,039	2,149	4,565	12,140
구성비(%)	100.0	33.9	2.5	50.7	1.5	3.1	8.3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소 계	국 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소 계	하동군	
필지 수	75	5	4	1	1	1	69
면적(m ²)	146,150	19,355	8,101	11,254	1,922	1,922	124,873
구성비(%)	100.0	13.2	5.5	7.7	1.3	1.3	85.5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게재생략

12.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146,150	-	146,150	100.0	

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금성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산업형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일원	146,150	-	146,150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150	-	146,150	100.0	
산업시설용지	107,970	-	107,970	73.9	
지원시설용지	4,680	-	4,680	3.2	
공공시설용지	32,800	-	32,800	22.4	
도 로	9,970	-	9,970	6.8	
주차장	2,360	-	2,360	1.6	
공 원	7,760	-	7,760	5.3	
완충녹지	12,710	-	12,710	8.7	
오수처리시설	700	-	700	0.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3	672	9,970	1	284	3,010	2	388	6,960	-	-	-
중로	2	388	6,960	-	-	-	2	388	6,960	-	-	-
소로	1	284	3,010	1	284	3,010	-	-	-	-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하 동 군 공 보

(30) 제 476 호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라)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710	-	12,710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486	-	7,486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224	-	5,224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13,350			113,350	
-	IBL	113,350	IBL-1	갈사리 204-1	77,320	산업시설용지
			IBL-2	갈사리 202-18	7,180	
			IBL-3	갈사리 202-1	5,470	
			IBL-4	갈사리 221-1	18,000	
			IBL-5	갈사리 204-6	4,680	지원시설용지
			IBL-6	갈사리 204-13	700	오수처리시설

하 동 군 공 보

(31) 제 476 호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BL - 1 1BL - 2 1BL - 3 1BL - 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 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카’ 호 및 ‘타’ 호의 공장, ‘파’ 호의 창고시설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 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나’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다’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이하		
-	1BL - 5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나’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다’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	1BL - 6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하 동 군 공 보

(32) 제 476 호

5) 기타사항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제어 요소	적용구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공공 보행통로	산업시설용지내 (중로2-2호선 ~완충녹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보행 동선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토록 계획함 • 공공보행통로 폭 : 3m이상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원면적	7,760	-	7,760	
시설면적계	998	-	998	시설율 : 12.9%
건축 면적	바닥면적	-	-	
	연면적	-	-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760	-	7,760	
도로 및 광장	998	-	998	
녹 지	6,762	-	6,762	녹지율 : 87.1%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98	-	-	-	
기정	1	도로	-	743	-	-	-	
기정	2	중앙광장	-	117	-	-	-	
기정	3	휴게광장	-	138	-	-	-	

나)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762	6,762	-	-	-	
기정	-	녹지	-	6,762	6,762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 계		417	743	-	-	417	743
소 로	1류	기정	-	-	-	-	-
	2류	기정	-	-	-	-	-
	3류	기정	417	743	-	-	417

4) 세부도로조서

가)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417	743				
기정	소로	3	1	3.0	32	106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2	3.0	68	222	연결로	소로3-1	중앙광장	
기정	소로	3	3	3.0	18	60	연결로	중앙광장	소로3-7	
기정	소로	3	4	2.0	31	69	산책로	소로3-2	소로3-5	
기정	소로	3	5	2.0	16	29	산책로	소로3-4	휴게광장	
기정	소로	3	6	2.0	13	25	산책로	휴게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7	1.5	124	54	산책로	소로3-2	소로3-1	
기정	소로	3	8	1.5	115	178	진입로	서측경계	남측경계	

하동군 고시 제2017-3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시행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

구 분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사 업 명	주교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주교천	하동	금남	계천	하천제방승상으로 재해 예방 및 침수 방지	제방승상 L=80m, H=1m	'17. 2. 28 ~ '17. 6. 27.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하 동 군 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4.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일반하천정비사업비 80백만원

※ 관계도면은 하동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7-3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시행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

구 분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사 업 명	여의 (횡천2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여의천	하동	횡천	애치	하천 내 퇴적된 토사 및 수초의 준설을 통한 하천 재해 예방	하상부 준설 A=9,181㎡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하 동 군 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4.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여의(횡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비 109백만원

※ 관계도면은 하동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7-235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17.1.8)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자연대책기간, 비상단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우 단계 구분, 재난발생시 대응·복구활동,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

- 대책본부 운영기간 및 비상단계 운영체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업무와 역할을 정함(안제6조 내지 안제7조)
- 대책본부장의 상황판단회의 개최여부를 정함(안 제8조)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복무, 사전교육등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내지 안 제25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880-2257, FAX 880-2249, bonde@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동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40) 제 476 호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7.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 기준은 별표3, 업무와 역할은 별표4와 같다.
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5, 업무와 역할은 별표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42) 제 476 호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과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 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실과소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단,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 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하 동 군 공 보

(46) 제 476 호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5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견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 능 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처 및 도,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도,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 공 급 피 해 시 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도,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하 동 군 공 보

(50) 제 476 호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p>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p> <p>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p> <p>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p> <p>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p> <p>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p> <p>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p>
	8) 교통대책반	<p>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p> <p>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p> <p>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p> <p>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p> <p>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p> <p>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9) 의료·방역 사업지원반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p> <p>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p> <p>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p> <p>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p> <p>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p>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p> <p>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p> <p>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p> <p>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p>
	11) 사회질서 유지반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p> <p>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p> <p>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p> <p>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p>
	12) 수색 근·구급반	<p>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p> <p>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p> <p>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정보 제공</p> <p>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p> <p>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p>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 상황총괄반	<p>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p> <p>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p>													
나. 협업기능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1) 긴급생활안정지원반</td> <td rowspan="12"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td> </tr> <tr> <td style="padding: 2px;">2) 재난현장환경정비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3) 긴급통신지원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4) 시설피해응급복구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6) 재난수습홍보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8) 교통대책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11) 사회질서 유지반</td> </tr> <tr> <td style="padding: 2px;">12) 수색, 구조·구급반</td> </tr> </table>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하 동 군 공 보

(52) 제 476 호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미래창조과학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행정과 -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과 행정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자치부	8. 정부중요시설(군청사) 사고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실 체육시설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수산과 - - 경제수산과 -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하 동 군 공 보

(53) 제 476 호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수산과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군 해당 없음)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 도시건축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경제수산과 경제수산과
국민안전처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금융위원회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4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실
산림청	49. 산불, 50. 산사태	산림복지과
<p>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p>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6명+ a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a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재난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a)	-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기획조정실(2a), 주민행복과(a), 안전총괄과(a), 행정과(a), 건설교통과(2a), 경제수산과(a), 환경보호과(a), 보건소(a), 하동경찰서(a), 하동소방서(a)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0+a+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0+a+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a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a)	- 재난상황관리반(3+a)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1) 재난 주관부서(1)
	상황보고서 작성 (3+a)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a)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a)	- 행정과 직원(1+a)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기획조정실(2a), 주민행복과(a), 안전총괄과(a), 행정과(a), 건설교통과(2a), 경제수산과(a), 환경보호과(a), 보건소(a), 하동경찰서(a), 하동소방서(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56) 제 476 호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20+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7+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관리반(6+α)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2) 재난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α)	- 운영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기획조정실(2α), 주민행복과(α), 안전총괄과(α), 행정과(α), 건설교통과(2α), 경제수산과(α), 환경보호과(α), 보건소(α), 하동경찰서(α), 하동소방서(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총괄조정관	대책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대책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대책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 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통합지원본부 현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행정과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 행복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	환경 보호과	

하 동 군 공 보

(58) 제 476 호

긴급 통신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 	행정과
시설 응급복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도,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건설 교통과
에너지 기능복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 	경제 수산과
재난수습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 방송, 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기획 조정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 총괄과
교통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건설 교통과
의료·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기획 조정실
사회질서 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하동 경찰서
수색,구조 구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하동 소방서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a+\beta+\gamma$ 명	
재난상황 총괄반 ($10+a$ 명)	반 장(1)	담 당 관(재난담당과장)
	상황관리총괄팀 ($3+a$)	-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수습상황과약팀 ($6+a$)	-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4)
재난상황협업기능반(a)	- 협업기능반(12) 기획조정실(2a), 주민행복과(a), 안전총괄과(a), 행정과(a), 건설교통과(2a), 경제수산과(a), 환경보호과(a), 보건소(a), 하동경찰서(a), 하동소방서(a)	
재난대응협업반(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육군 제8962부대 5대대,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등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소 소속 직원(γ)	

-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재난상황총괄반	상황관리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총괄부서 주관부서
	수습상황파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총괄부서 주관부서
재난상황협업기능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주민행복과
	긴급통신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 	건설교통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수산과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건설교통과

하 동 군 공 보

(61) 제 476 호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 	보건소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환경보호과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기획조정실
사회질서 유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하동경찰서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 	하동소방서
재난수습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 	기획조정실
재난대응협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현장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 	

하 동 군 공 보

(62) 제 476 호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4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6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 괄 조 정 관	차 장	본 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 해 조 사 및 복 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 책 본 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하 동 군 공 보

(64) 제 476 호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수 또는 읍·면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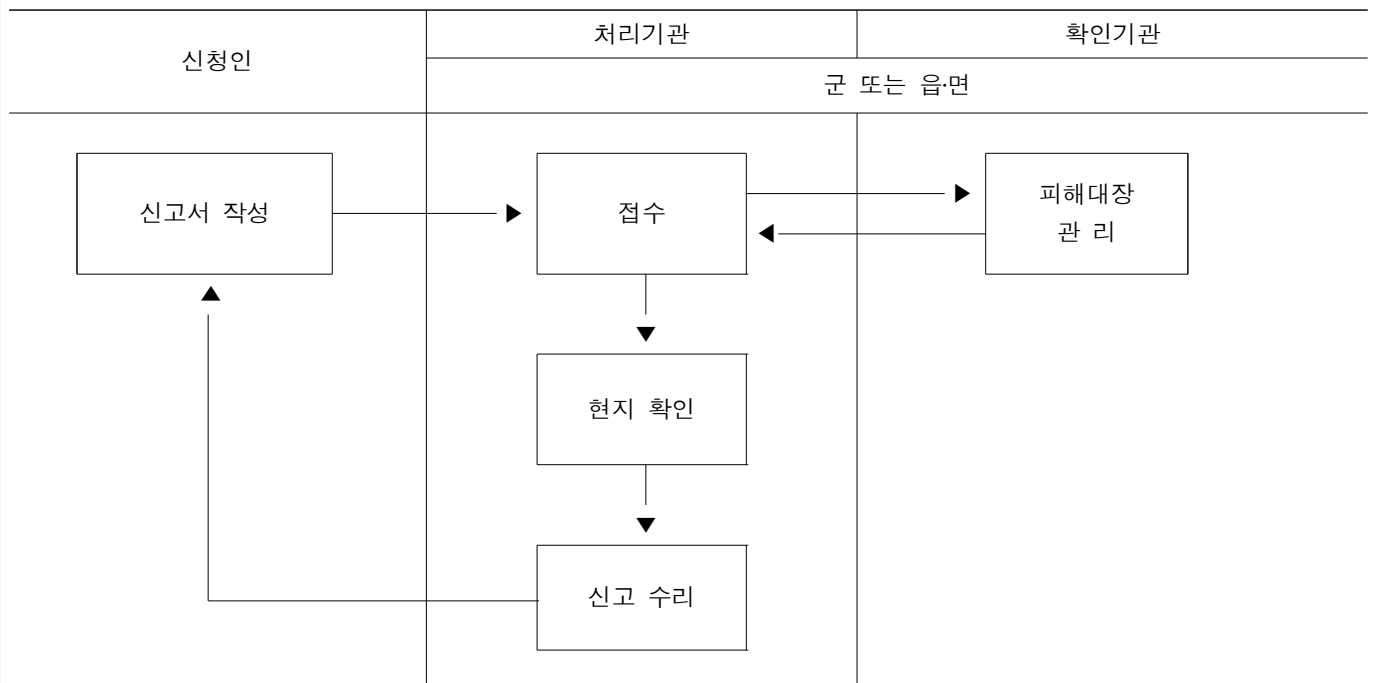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하 동 군 공 보

(66) 제 476 호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 앙 직	성 명	(인)
]	도 직	성 명	(인)
담당과장		직	성 명	(인)
조 사 자		직	성 명	(인)

①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② 피해 · 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 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하동군 공고 제2017-246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전입세대 지원(안 제3조2항, 제4조1항, 별표1) : 개정
 - 전입 세대 지원금 : 3인 50만원
 -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안 제3조4항, 제4조1항, 별표1) : 개정
 - 현역병 : 30만원(2년 복무기간 중 15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현역부사관 : 군내 복무기간 중 1회 15만원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귀농정착 빈집수리비(안 제4조1항, 별표1) : 삭제
 -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빈집정보 제공 (안 제4조1항, 별표1) : 신설

-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안 제3조5항, 제4조1항, 별표1) : 신설
 - 1인당 1회 30만원 지원
-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신설
 -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위원회 위원 20인 이내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842 ~4, FAX 880-2159, e-mail cool95@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의무경찰”을 “(전환복무자, 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양수) 검사비”를 “임산부 양수 검사비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기업체 근로자 전입금,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으로 하고,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등”을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빈집정보 제공 등”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대시책의 협조·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대 운동의 협의 및 추진
2. 인구증대 정책·과제 발굴과 시행
3. 인구증대 시책 홍보 및 추진 협조
4. 그 밖의 인구증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 동 군 공 보

(71) 제 476 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유관 기관, 사회·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인구증대 시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⑤ 위원회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단,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은 첫 회 100만원 지급 후 1년 마다 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월에 100만원 분할 지원)
2. 출산용품 구입비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하동사랑상품권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4.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5. 임신부 양수 검사비 지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 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제4조제2항 관련)

시 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전입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 2인 : 30만원 · 3인 : 50만원, 다만, 2인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 4인 이상 : 70만원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이내
3. 전입학생 지원금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4.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국방의무자로서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부사관 포함). 다만, 부사관은 본인 포함 2인 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원한다.	-현역병 : 30만원(2년 복무기간 중 15만원씩 2회 분할지원) -부사관 : 군내 복무기간 중 1회 15만원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5.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6.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업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이내
7. 전입세대 팸투어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8. 결혼식장 무료 대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9.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만 30세 이상 무료암표지 검사 ·남(간암, 소화기계취장·전립선암) ·여(간암, 소화기계취장·난소·유방암)

하 동 군 공 보

(74) 제 476 호

시 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0.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내용>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나.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11. 농지 및 축사등 알선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12. 특별 영농교육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귀농자반 별도 편성 및 전문지도사 지역 담당제
13. 빈집정보 제공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별표 3]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 관련)

구 분	시 책 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다동이 안전보험	행 정 과	
	영유아 양육수당	행 정 과	
	출산장려금	행 정 과	
	출산용품 구입비	행 정 과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행 정 과	
	임산부 철분제	보 건 소	
	임산부 양수 검사비 지원	보 건 소	
전입세대 지원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관광실	
	전입세대 팸투어	문화관광실	
	결혼식장 무료 대여	문화관광실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미래전략과	
	전입세대 지원금	행 정 과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행 정 과	
	전입학생 지원금	행 정 과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행 정 과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보 건 소	
	영농정착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농업기술센터	
	특별 영농교육	농업기술센터	

하 동 군 공 보

(76) 제 476 호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신분 청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계좌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양수 검사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압포지 검사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input type="checkbox"/> 영농 <input type="checkbox"/>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특별 영농교육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팸투어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전입세대 지원”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이상 군에 <u>거주한</u> 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생략) 3. ----- ----- ----- ----- ----- <u>거주하는</u> ----- -----
제3조(지원대상) ① ~ ② (생략) ③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 전입세대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u>거주한</u>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한다(단, 1인 이상 전입도 가능) ④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은 국방의무자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를 위하여 군 내로 전입신고한 <u>군인(의무경찰 포함)</u> 에게 지원한다. <u><신 설></u>	제3조(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거주하는</u> ----- ----- ④ ----- ----- ----- ----- ----- <u>(전환복무자, 부사관</u> ----- ⑤ 제2호제3호에도 불구하고 <u>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u>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증
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지원 사항 : 출산장려
금, 출산용품 구입비, 쌍둥이 이
상 출산 축하금, 임신부 철분제
지원, 고위험 임신부 기형아(양
수)검사비, 다둥이 안전보험, 영
유아 양육수당

2. 전입세대 지원 사항 : 전입세대
지원금, 노인 인구 전입세대 지
원금,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 군
인 휴가비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
원금, 전입세대 팸투어, 결혼식
장 무료 대여, 전입세대 압표지
검사, 영농정착 보조금, 귀농정
착 빈집수리비 등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 (생 략)

<신 설>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
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

-----,

1. -----

---- 임산부 양수 검사비 지원, -

2. -----

----- 기업체
근로자 전입금, 전입 군인 휴가
비 지원금, -----

----- 농지 및 축
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빈집
정보 제공 등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6조(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
구증대시책의 협조·지원하거나 효

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인구증대 운동의 협의 및 추진
- 2. 인구증대 정책·과제 발굴과 시행
- 3. 인구증대 시책 홍보 및 추진 협조

4. 그 밖의 인구증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군의회 의원
- 2. 유관 기관, 사회·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 3. 인구증대 시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⑤ 위원회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 제9조 (생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별표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 제1항, 제4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단,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은 첫 회 100만원 지급 후 1년 마다 대상자의 신생아에 따라 100만원 분할 지원)
2. 출산용품 구입비	제 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하등사탕상품권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제 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4.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5. 고위험 양분 기형아 (양수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 양수 검사 결과 의사소견장전에 의해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 제1항, 제4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단,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은 첫 회 100만원 지급 후 1년 마다 대상자의 생일이 속한월에 100만원 분할 지원)
2. 출산용품 구입비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하등사탕상품권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4.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5. 임신부 양수 검사비 지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관련)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전입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인 또는 3인 인 경우: 30만원 - 전입 세대원이 4인 이상인 경우: 70만원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만 70세 이상 노인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이내
3. 전입학생 지원금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4.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국방의무자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신고한 군인	1회에 한하여 총 30만원(전역 시까지 1년 1회 15만원 지급)
5.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전국번호판이 아닌 지역번호판으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할 차량	전 세대원의 지역번호판 교체비 전액
6.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업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이내
7. 전입세대 뺨뚱어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8. 결혼식장 무료 대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9. 전입세대 압표지 검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만 30세 이상 무료압표지 검사 · 남간암 소화기계·췌장·전립선암 · 여간암 소화기계·췌장·난소·유방암
10.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내용>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나.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11.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군에 이주하여 수리할 빈집을 소유한 사람 및 5년 이상 임차계약 한 사람	빈집수리비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0% 지원 전세대 전입자로서 영농기반을 갖춘 귀농세대 우선 및 차등 지원

[별표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관련)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전입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 2인 : 30만원 · 3인 : 50만원 다만, 2인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 4인 이상 : 70만원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이내
3. 전입학생 지원금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4.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국방의무자로서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부사관 포함) 다만, 부사관 본인 포함 2인 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원한다.	현역병 : 30만원(2년 복무기간 중 15만원씩 2회 분할지원) 부사관 : 군내 복무기간 중 1회 15만원(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5.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6.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업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이내
7. 전입세대 뺨뚱어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8. 결혼식장 무료 대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9. 전입세대 압표지 검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만 30세 이상 무료압표지 검사 남간암, 소화기계, 췌장, 전립선암, 여간암, 소화기계, 췌장, 난소, 유방암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2.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13. 특별 영농교육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귀농자만 별도 편성 및 전문지도사 지역 담당제
14. 빈집정보 제공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별표3]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
(제5조 관련)

구분	시책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다둥이 안전보험	행정과	
	영유아 양육수당	행정과	
	출산장려금	보건소	
	출산용품 구입비	보건소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보건소	
	임산부 철분제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양수) 검사비	보건소	
	전입세대 지원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관광실
전입세대 팸투어		문화관광실	
결혼식장 무료 대여		문화관광실	
전입세대 지원금		행정과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행정과	
전입학생 지원금		행정과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행정과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건설교통과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보건소	
영농정착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농업기술센터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농업기술센터	
특별 영농교육		농업기술센터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0.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내용>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나.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11.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12. 특별 영농교육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귀농자만 별도 편성 및 전문지도사 지역 담당제
13. 빈집정보 제공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별표3]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
(제5조 관련)

구분	시책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다둥이 안전보험	행정과	
	영유아 양육수당	행정과	
	출산장려금	행정과	
	출산용품 구입비	행정과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행정과	
	임산부 철분제	보건소	
	임산부 양수 검사비 지원	보건소	
	전입세대 지원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관광실
전입세대 팸투어		문화관광실	
결혼식장 무료 대여		문화관광실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미래전략과	
전입세대 지원금		행정과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행정과	
전입학생 지원금		행정과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행정과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보건소	
영농정착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농업기술센터	
특별 영농교육		농업기술센터	

하 동 군 공 보

(84) 제 476 호

[별지 제1호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신분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출산 장려 지원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고위험 임신부 기형아(양수) 검사비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가족 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입일자
전입 세대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압포지 검사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영농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input type="checkbox"/>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특별 영농교육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별지 제1호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신분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출산 장려 지원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양수 검사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출산용품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가입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가족 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입 세대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압포지 검사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영농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input type="checkbox"/>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특별 영농교육 <input type="checkbox"/> 전입세대 팸투어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7-270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3 월 3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조문 삭제 및 수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수정.
-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별표2)의 관련 근거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기준에 맞게 수정.
- 숲속목재체험동(트리하우스)이 준공됨에 따라 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이용요금 추가, 주차장 이용요금 삭제 및 산림레포츠시설 이용 요금 증액.

3. 주요 내용

- 제1조 구재봉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제22조에 따라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조항 근거 삭제.
- 제3조 시설사용료의 근거 조항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 근거 수정.
- 제5조의 시설사용료(별표2)의 ‘취소시기’ 및 ‘반환기준’의 관련 근거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에 맞게 수정.
-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대상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관련법 시행령 제9조 7항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 근거 수정.
- 숲속목재체험동(트리하우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이용요금 추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하동군 (산림녹지과, 전화 055-880-2489, FAX:055-880-2469, e-mail: cgy6952@korea.kr) 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조례 제 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을 “제9조제7항제2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원)

구분	기준	이용기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6인용(43.05㎡)투룸	1동/1일	120,000	80,000	
	트리하우스 (단독형)	2인실(24.11㎡)	1동/1일	70,000	50,000	
		3인실(27.05㎡)	1동/1일	90,000	60,000	
		4인실(35.03㎡)	1동/1일	100,000	70,000	
숲속휴양관 (콘도형)	6인용(37~40㎡)원룸 8인용(45~47㎡)원룸	1실/1일	90,000 100,000	60,000 70,000		
객실이용요금 감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4~7등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세미나실	1실 405㎡	4시간 기준	300,000	200,000	1실	
		8시간 기준	400,000	300,000	1실	
세미나실의 감면	하동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 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의 50% 할인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 른	1,000	800	동절기 (12~2월)에는 입장료 면제		
	청소년	600	500			
	어린이	300	200			
모노레일	인	3,000	2,000	스카이질 이용자는 면제		
산림레포츠 시설	어린이코스	인	10,000	8,000		
	성인코스		15,000	13,000		
	스포츠코스		15,000	13,000		
	스카이질(코스당)		10,000	8,000		

1. 숲속의집, 숲속휴양관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
까지로 하며, 시간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추징 할 수 있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 징수한다.
3. 세미나실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징하며, 2명 이하로 제한 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
		취소시기(사용개시일 기준)	반환비율 (총요금 기준)	
성수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참조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 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없음	잔액반환		

※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3조(정의) ----- -----.</p>
<p>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2. ~ 8. (생략)</p>	<p>1 . ----- -----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p> <p>2. ~ 8.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p> <p>2. ~ 4. (생략)</p>	<p>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제9조제7항제2호-----</p> <p>2. ~ 4.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7 - 254호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변경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백련마을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8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83 ~ 백련리 325-4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하천정비 L=330m
- 라. 사업기간 : 2017. 01. ~ 2018. 12.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7년 02월 28일 ~ 03월 15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7년 3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옹진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백련마을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1	하동	진교	백련	783	도	1528	19	국토교통부	
2	하동	진교	백련	765-20	구	10866	1266	건설교통부	
3	하동	진교	백련	778	도	2383	16	국토교통부	
4	하동	진교	백련	365-1	도	572	1	국토교통부	
5	하동	진교	백련	321-5	수	439	32	국토교통부	
6	하동	진교	백련	362-6	수	5	3	국토교통부	
7	하동	진교	백련	365-19	답	5	5	하동군	
8	하동	진교	백련	325-1	도	10	10	하동군	
9	하동	진교	백련	325-4	제	6	6	하동군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1	하동	진교	백련	362-3	전	243	74	김정례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62
2	하동	진교	백련	362-2	답	218	2	김정례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40-1 옥성그린아파트 809호
3	하동	진교	백련	366	답	436	61	김승철	김해시 외동 833 일동한신아파트 117동 1001호
4	하동	진교	백련	321-1	답	2608	354	김명자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581-1
5	하동	진교	백련	321-2	답	2888	226	장동만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74-3
6	하동	진교	백련	321-3	답	1986	113	조순철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312
7	하동	진교	백련	321-4	답	3496	188	금영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 성원@ 511-1601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에서 근무 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채용기준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9조의2

2.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비고
생태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명	-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과학관 생태 해설 - 체험프로그램 홍보	

3. 채용자격요건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 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채용 자격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생태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 산림자원학, 산림환경자원학, 생물학, 동물생명과학, 식물생명과학, 원예학, 원예생명과학, 조경학과 지구환경과학, 지질환경과학 ※ 직무분야 : 식물생태, 동물생태 관련분야

4. 채용(계약)기간 : 2017. 3월 ~ 2017. 12월(10개월)

5.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6. 응시원서접수

가. 기간 : 2017. 3. 6(월) ~ 3. 14(화)

나. 장소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다. 방법 : 접수처에 방문하여 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가능)

7. 채용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16(목)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나. 면접 실시 : 2017. 3. 17(금) - 지리산생태과학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17(금) - 합격자 개별통지

8. 임금 및 근로조건

가.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함.

나. 보수 : 일급 62,000원(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 수당 지급)

다. 근로시간 : 1일8시간, 주5일근무(09:00-18:00)

* 근무시간, 근무요일은 과학관 휴관일과 운영 특성에따라 조정
라. 4대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근무장소 : 하동군지리산생태과학관(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30)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1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다. 이력서 1부(붙임양식)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선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시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원 본)

하동군수 귀하

본인은 하동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 응시는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하동군 수입 증지첨부란 (5,000원)	주 소 (도로명 주소)							자택전화 :
								이동전화 :
	학 력 (최종)	대학교 이 하	년	월	일	학교()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 급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응시표		성 명	(한글)						사 진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 응 시 번 호		생년 월일							
직 급	기간제근로자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유 의 사 항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의 '응시번호'란을 제외하고 **자필**로 작성 제출
-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기재
※ 도로명주소로 기재
- ③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함
- ④ 성 명 : 정자로 기재함 (3곳)
- ⑤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 (앞면)

<붙임 2>

이 력 서

※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성 별	
			한 자				
	현 주 소	(우: -) 하동군					
	거 소 지				병 역 사 항	필, 면제, 미필	
	e-Mail					복무기간 또는 면제사유	
	자 택 전 화				휴 대 폰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 학 구 분	비 고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담 당 업 무	퇴 직 사 유

자 격 · 어 학	자 격			어 학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발 급 기 관	어 학 시 험 명	점 수	취 득 일 자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이 력 서 작 성 요 령

1. 이력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 또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2. 이력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 작 성 요 령 》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주 소 : (도로명주소 작성)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한글문서로 작성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7 - 279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연화마을 세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목골천	연화마을세천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8-1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1-1	0.16	0.16	교량 3개소	2017. 3.	2017. 3.	소하천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8-1 번지 ~ 읍내리 101-1 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164.6km, 교량 : 3개소
 - 사 업 비 : 495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8-1 번지 ~ 읍내리 101-1 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3. ~ 2018. 3.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하 동 군 공 보

(106) 제 476 호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7년	비고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7년 3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5)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하 동 군 공 보

(108) 제 476 호

<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읍	리					성 명	주소
1	하동	하동	읍내	58-1	전	122	18	기획재정부	
2	하동	하동	읍내	58-2	하천	63	50	국토교통부	
3	하동	하동	읍내	58-3	전	149	38	기획재정부	
4	하동	하동	읍내	54-1	답	280	48	하동군	
5	하동	하동	읍내	54-2	답	44	44	하동군	
6	하동	하동	읍내	55-1	답	18	18	하동군	
7	하동	하동	읍내	55	답	28	28	하동군	
8	하동	하동	읍내	1547-2	구거	13,177	876	국토교통부	
9	하동	하동	읍내	54-3	답	90	90	하동군	
10	하동	하동	읍내	54-4	답	41	41	하동군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읍	리					성 명	주소
1	하동	하동	읍내	54	답	1,584	487	(주)제일피엔디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2
2	하동	하동	읍내	54-5	주차장	60	25	(주)제일피엔디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2
3	하동	하동	읍내	101-1	대지	801	30	사유지	명의인이 없음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연화마을 세천 정비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p> <p style="padding-left: 150px;">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padding-left: 150px;">전화번호 :</p> <p>하동군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7 - 281호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06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나. 사업위치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일원

다. 사업개요

배수장 신설(Q=4.7m³/s) 1개소, 수중축류펌프 Ø1,000mm×260kw×2대

수배전반 및 동력간선 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2017. 3월 ~ 2018. 12월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03.06. ~ 2017.03.21.(15일간)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13)

라. 이의신청방법 : 서면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토지 감정평가 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후 보상.

※ 공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사계획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편입토지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

※ 감정평가사업자 추천안내 :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m ²)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112) 제 476 호

다. 보상금 지급 :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지급.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공탁

5. 기타사항

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
 하며,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하동군
 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지조서 : 첨부물 참고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조서

연번	시군구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편입예상면적	성명	주소	비 고
1	하동	적량	고절	1065	- 1	답	1,943	990	전*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2	하동	적량	고절	1065	- 2	답	2,088	1,250	정*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소 계					4,031	2,240			

하동군 공고 제2017 - 282호

병천(두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병천(두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06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병천(두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나. 사업위치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일원

다. 사업개요

배수장 신설(Q=3.87m³/s) 1개소, 수중축류펌프 Ø800mm×65kw×3대
수배전반 및 동력간선 공사 1식

라. 사업기간 : 2017. 3월 ~ 2018. 12월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병천(두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03.06. ~ 2017.03.21.(15일간)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하 동 군 공 보

(114) 제 476 호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13)

라. 이의신청방법 : 서면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토지 감정평가 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후 보상.

※ 공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사계획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편입토지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

※ 감정평가사업자 추천안내 :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m ²)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 :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지급.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공탁

5. 기타사항

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
 하며,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하동군
 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지조서 : 첨부물 참고

병천(두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조서

연번	시군구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지목	면적	편입예상면적	성명	주소	비 고
1	하동	옥종	두양	504	-	답	1,603	1,603	강재근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	하동	옥종	두양	507	-	답	774	774	최종열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3	하동	옥종	두양	508	-	답	1,382	1,382	강문미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소계					2,377	2,377			

하 동 군 공 보

(116) 제 476 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하동군 공고 제 2017 - 298 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8일

하 동 군 수

도로의 종류	군도 2호선 및 화개교	노선명	화개장터삼거리~용강삼거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 기계(이륜차 포함)	구간	화개장터삼거리~화개교 ~화개119지역대(0.6km)
기간	2017년 3월 18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이유

봄 행락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과 혼잡을 해소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교통제한 구간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교통통제 구간 지형도

